

研究資料 5

1980. 12.

80年度 農水産食品의 都賣物價 維持 適正線 및 安定對策

研 究 員 李 殷 雨
首席研究員 許 信 行

빈

면

80年度 農水産食品의 都賣物價 維持適正線 및 安定對策

- I. 序論
- II. 適正價格의 概念과 決定方式
- III. 主要 農産物 適正都賣價格의 試算
- IV. 適正價格 維持對策
- V. 要約 및 結論

I. 序 論

1. 研究의 필요성

全國都賣價格은 1969 ~ 79 年사이 年平均 15.5 %씩 增加해 왔다. 이중 非食料品 價格은 年平均 14.6 %씩 增加한데 비하여

食料品價格은 18.6%로서 食料品價格이 平均 都賣價格 水準을 잊
돌고 있다. 食料品價格은 品目에 따라 騰落이 심한데 예를들면 78
년에 고추, 마늘 價格이 暴騰하였고, 79년에는 양파, 돼지고기 價
格이 暴落하는 등 부분적으로 價格의 기복이 매우 크게 나타나
고 있다.

食料品價格이 不安定한 것은 農産物의 需要와 供給이 非彈力的
인데 基因하고 있다. 供給이 非彈力的인 것은 生産이 自然條件에
크게 依存하고 있으며 固定費用이 크기 때문에 價格變動에 큰 影
響을 받지 않고 總生産量을 極大化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또 生産에 대한 意思決定으로부터 실제 算出時期까지의 期間
이 매우 길어 供給이 계속성을 갖고 적응해 갈 수 없는데도 이
유가 있다. 需要가 非彈力的인 것은 대개의 農産物이 生活必需品
이라 需要가 硬直的이면서 연중 平準化된데 基因한다.

農産物價格의 不安定은 生産者는 물론 消費者에게도 불리한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 農産物價格은 農家收入과 直結되어 있기 때
문에 價格暴落時 生産者인 農民은 많은 타격을 입게 된다. 價格暴
騰時 消費者에게는 필요이상으로 家計費支出을 강요하며 이것은 賃
金上昇을 일으켜 輸出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弱化시킬 수도 있다.

生産農民과 消費者를 동시에 保護하기 위해서는 食料品 價格의
安定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農水産食品의 適正價格 水準을 分析하
고 그 價格水準을 維持하는 방법을 研究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研究目的

農水産食品의 都賣物價 維持適正線과 그 維持對策을 찾아내는 것이 研究의 基本目的이며 細部的인 目的으로는 첫째, 適正價格의 概念을 研究하고 둘째, 各 品目別로 適正價格 水準을 試算해 내며 셋째 政府가 政策的으로 價格水準決定에 介入할 판단기준을 찾아내고 넷째, 各 品目別로 그 適正價格을 維持할 방법을 研究하는데 目的이 있다.

3. 研究方法 및 範圍

研究方法에 있어서 適正價格의 算定은 既存의 統計資料를 利用하여 生産費補償價格, 패리티가격, 消費者負擔許容價格 등 3 가지 方式으로 計算하였다. 適正價格의 維持對策은 먼저 선진제국의 農産物價格安定對策을 研究하고 既存의 國內 研究結果와 이제까지의 政府施策을 綜合 檢討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維持對策을 摸索하였다.

研究範圍는 80年 出荷期부터 81年 端境期까지 各 月別 適正價格을 서울을 기준으로 算定하였다. 對象品目の 選定에는 都賣物價 加重值가 1보다 커서 價格安定對策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品目을 선정하였는데 選定品目は 다음과 같다.²⁾

- 1) 穀類 : 쌀, 보리쌀
- 2) 豆類 : 콩
- 3) 薯類 : 고구마, 감자

- 4) 果實類 : 사과, 배, 귤
- 5) 特用作物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 6) 畜產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 7) 菜蔬類 : 무우, 배추

II. 適正價格의 概念과 決定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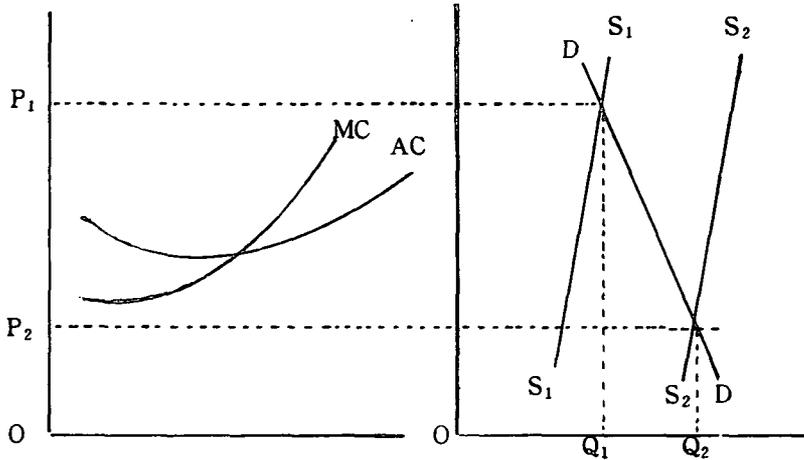
1. 適正價格의 概念

市場에서 한 財貨의 價格은 需要와 供給에 의해서 決定된다. 需要가 供給을 초과하면 價格이 上昇하고, 供給이 需要를 초과하면 價格이 下落하여 需給이 일치되는 點에서 한 財貨의 均衡價格이 形成된다.

均衡價格은 市場의 狀況에 따라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決定될 수 있다. 特히 農產物은 需要와 供給이 모두 非彈力的이어서 供給量의 작은 變化에도 價格變動은 매우 크다. <圖 1>에서와 같이 供給量이 OQ_1 이면 價格이 OP_1 으로 暴騰하고, 供給量이 OQ_2 이면 價格이 平均生産費 以下인 OP_2 로 暴落하여 價格의 變動幅은 굉장히 크다.

價格의 暴騰, 暴落은 資源配分과 所得分配機能³⁾을 왜곡시켜 生産者, 消費者 모두에게 不利益을 가져오므로 선진제국의 경우 價格을 一定水準안에 維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圖 1> 非彈力的인 需要와 供給下에서 市場價格 決定



EEC의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目標價格을 정하여 價格政策의 基準으로 삼고있다. 麥類의 경우 이 目標價格보다 12 ~ 20 %, 牛肉의 경우 10 % 낮은 水準에서 介入價格을 정하고 이 價格보다 낮을 때는 介入機關에서 收買한다.⁴⁾ 美國은 그 前年度의 目標價格, 農家購入價格指數, 과거 3年間의 平均生産量 등에 의하여 매년 目標價格을 정하고 이것에 의해 價格政策을 펴 나가고 있다. 市場價格이 目標價格보다 높을 때는 아무런 補償도 없지만 生産者 受取價格이 目標價格보다 낮을 때는 두 價格의 차이를 基準으로 缺損補償金이 支払된다.⁵⁾ 日本도 肉類의 경우는 基準年度의 農家販賣價格에 生産費指數, 需給調定係數, 枝肉價格變動係數를 基礎로 安定基準價格과 安定上位價格을 算出하여 이 範圍안에서 價格을 維持시키려 하고 있다.⁶⁾ EEC의 介入價格, 美國의 目標價格, 日本의 安定基

準價格은 生産者를 保護하고, EEC의 目標價格, 日本의 安定上位價格은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한 價格이다.

生産者와 消費者保護를 위해 한 市場에서 형성된 市場價格이 어느 範圍內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한 水準이나 하는 基準을 適正價格水準이라 말할 수 있다. 適正價格이란 理論적으로 生産者에게 적당한 利潤을 보장하면서 消費者에게도 희생이 되지 않는 價格을 말한다.⁷⁾

生産者保護價格은 平均生産費를 補償하고 適正利潤을 보장할 수 있는 水準 以上에서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生産者價格이 이 水準보다 낮을 경우에는 生産農民들의 生産意慾이 떨어져 次期の 生産規模가 減縮될 수 있기 때문이다. 消費者支払價格은 무엇보다도 먼저 消費者所得이 許容할 수 있는 선에서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消費者價格이 所得의 上昇보다 앞질러 上昇하게 되면 家計費에 壓力을 주어 賃金上昇要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水準 以上을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適正價格이라는 것은 生産者와 消費者를 동시에 保護할 수 있는 價格, 즉, 生産者에게는 平均生産費에다 適正利潤을 保障하고 消費者에게는 消費者 부담이 許容 가능한 水準 사이에 있는 價格의 幅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適正價格 推定方式 考察

適正價格을 推定하는 方法에는 算定基準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몇 가지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生産者保護를 위해서는 生産費를 基準으로 하는 生産費補償價格과 非農産物 價格水準을 基準으로 하는 價格 Parity 方式이 있다. 消費者保護를 위해서는 所得增加率을 基準으로 하는 消費者負擔許容價格方式 등이 있다.

가. 生産費補償方式⁸⁾

生産費補償方式이란 生産에 投下된 平均生産費를 충분히 補償해 주는 方式인데 그 이유는 長期的인 면에서 볼 때 平均生産費 以上은 補償되어야 再生産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機會費用의 立場에서 自家勞動, 土地用役 등의 報酬가 충분히 補償될 수 있는 水準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生産費補償方式은 生産者保護를 위한 下限價格이 될 수 있다.

이 生産費補償方式이 適正價格水準으로 適用하기에는 몇 가지 難點이 있다. 그 難點으로서 農業生産에는 自家勞動, 土地用役 등 실제 市場에서 購入하지 않은 投入要素의 比重이 큰데, 이들 要素의 評價가 주관적으로 판단되기 쉽고, 個別 農家마다 生産費에 차이가 있어 平均生産費 概念을 全体農家에 一律적으로 適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 方式은 供給側만을 감안한 것이지 需要側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問題點이 있다.

나. 價格 Parity 方式⁹⁾

價格 Parity 方式이란 農家購入價格指數가 基準年度에 비해 上昇된 比率만큼 農家販賣價格水準이 上昇된 價格水準을 適正價格으로 保障하는 方式이다. Parity는 평형을 의미하는데 가격

Parity 는 農産物의 他商品 및 用役에 대한 購買力 즉 交易條件을 同一한 水準에 維持하는 것이다. 이 方式은 生産費補償方式의 代案으로 生産者保護를 위한 價格水準으로 適用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生産費補償方式이 計算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主觀적으로 판단되기 쉬워서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價格Parity 方式에도 다음과 같은 缺點을 가지고 있다. 缺點으로서는 基準年度의 선정에 客觀性을 부여하기가 힘들고 또 交易條件을 基準年度에 동결시킴으로써 技術發達에 의한 生産能率과 農業生産構造의 變遷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또 豊凶에 관계없이 購入價格指數에 따라 價格을 決定함으로써 需要나 供給側을 전혀 考慮하지 않고 있다는 短點도 있다.

다. 消費者負擔許容價格¹⁰⁾

消費者負擔許容價格이란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消費者가 負擔을 許容할 의사가 있는 價格水準을 適正價格으로 하는 방식이다. 所得이 增加하면 需要量이 變化하고 이것은 다시 市場價格을 變化시킨다. 所得增加에 따라 消費者가 負擔할 의사가 있는 價格水準을 價格伸縮性係數와 所得彈性値가 클수록 그 水準은 클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frac{\frac{\Delta Q}{Q}}{\frac{\Delta Y}{Y}} = \epsilon_Y$$

$$\frac{\Delta Q}{Q} = \epsilon_Y \cdot \dot{Y}$$

$$\frac{\frac{\Delta P}{P}}{\frac{\Delta Q}{Q}} = \xi_p$$

$$\frac{\Delta P}{P} = \dot{P} = \xi_p \cdot \frac{\Delta Q}{Q} = \xi_p \cdot \epsilon_Y \cdot \dot{Y}$$

$$\therefore P_u = P_o (1 + \xi_p \cdot \epsilon_Y \cdot \dot{Y})$$

여기서

P : 價格

Q : 物量

Y : 所得

ξ_p : 價格伸縮性係數

ϵ_Y : 所得彈性值

P_u : 구하는 價格

P_o : 基準價格

이 方式은 所得增加에 따라 消費者가 부담할 수 있는 上限價格이 될 수 있다. 이 방식 즉, 消費者負擔許容價格方式은 基準年度에 객관성이 없고 供給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短點이 있다.

Ⅲ. 主要農產物 適正都賣價格의 試算

1. 試算方法

適正都賣價格의 試算은 生産費補償方式, 價格 Parity 方式, 消費

者負擔許容價格方式 등 세 가지로 접근하여 모두 다 品目別로 收穫되는 달의 適正都賣價格을 計算했다. 이 適正都賣價格에다 月別 振幅係數를 곱하여 月別適正都賣價格을 구하였다. 畜産物의 경우는 年中 生産되므로 年平均 適正都賣價格에 月別振幅係數를 곱하였다. 月別振幅係數는 매년 出荷期부터 다음해 端境期 까지의 價格平均 值를 基準으로 하여 매년 月別振幅係數를 구한 다음 이를 10個 年 (1969 ~ 79) 平均值를 月別振幅係數로 삼았다. <表 1 >, 단 畧은 4 개년 平均值이다. 여기에 利用된 資料는 商工會議所 「물가총람」 에 依하였고, 쇠고기, 돼지고기, 果實類는 韓國銀行의 「물가총람」 에서 蒐集하였다.

生産費補償方式은 79年度 「農畜産物標準所得」, (農村振興庁), 의 各 生産要素金額에 금년의 豫想增加率을 곱해서 80年度の 生産費로 삼았다. 豫想增加率은 1970 ~ 79年동안 各 生産要素의 平均複利增加率을 適用하였으며 金년도의 요소가격이 確定된것은 그 대로 使用했다. <表 2 >. 土地時価는 農協中央會의 「全國地価動向」 을 利用하였고 肉鷄의 生産費는 畜産振興會의 「畜産物生産費調査 報告」를 利用하였다. 이렇게 구한 農家販賣適正價格에다 農協中央 會의 「農産物商品便覽」에 있는 都賣마진을 곱하여 生産費補償方 式에 의한 適正都賣價格을 試算하였다.

< 表 1 >

都賣價格月別振幅係數

	11	12	1	2	3	4	5	6	7	8	9	10
쌀	93.0	92.8	93.6	97.3	98.1	97.8	101.8	102.2	104.2	105.2	106.4	107.2
콩	92.0	91.5	93.5	98.1	97.8	97.2	100.6	103.1	107.8	109.4	107.0	102.2
고구마	56.7	67.6	75.9	89.2	89.8	96.2	124.6	147.7	169.0	128.4	85.4	69.7
무우	56.0	64.6	77.6	94.3	101.8	142.7	132.3	81.9	101.2	121.5	132.5	93.7
배추	49.4	59.2	82.0	102.8	123.2	143.1	93.2	62.8	98.1	139.9	160.8	85.5
사과	80.0	82.4	88.3	93.2	98.1	102.1	110.4	115.3	117.3	115.6	102.7	94.8
배	87.5	86.5	89.3	92.6	97.4	100.0	106.2	110.5	110.9	110.2	109.1	101.0
귤	76.3	81.2	84.3	100.3	103.9	107.8	107.8	107.8	107.8	107.8	107.8	107.8
고추	92.7	90.7	89.6	93.4	94.5	94.9	101.7	106.9	105.1	102.3	108.1	120.3
참깨	90.7	91.4	94.6	99.6	99.8	102.7	110.1	113.1	116.1	111.9	84.9	85.4

	7	8	9	10	11	12	1	2	3	4	5	6
보리쌀	93.0	94.7	95.7	95.9	99.1	100.2	102.4	101.6	102.6	104.9	105.3	104.6
감자	62.2	73.0	79.3	83.3	84.7	101.3	108.6	115.9	118.2	123.4	151.8	98.5
마늘	83.2	85.7	85.6	89.5	94.6	94.6	100.5	107.7	111.0	119.2	137.7	91.0
양파	49.4	59.3	75.6	84.4	93.4	108.7	121.2	134.5	139.7	172.9	97.0	64.1

	1	2	3	4	5	6	7	8	9	10	11	12
쇠고기	88.6	91.5	93.9	97.7	99.3	101.2	102.7	103.3	104.5	105.0	105.0	105.5
돼지고기	92.0	96.3	97.2	98.1	99.5	100.5	102.3	101.5	102.7	103.1	103.8	103.3
닭고기	93.0	96.7	97.9	99.7	102.4	99.0	100.6	104.4	103.5	100.4	100.2	100.4
계란	91.3	94.9	95.4	100.9	102.5	99.7	95.8	100.1	112.1	109.6	99.8	97.8

< 表 2 > 生産要素價格의 年間豫想增加率, 1980

要 素 名	豫 想 增 加 率	要 素 名	豫 想 金 額
	%		원
農 村 賃 料 金	27.3	벼 種 苗 費 (1 kg 당)	345.4
種 子 類	15.1	大 麥 " (")	204.4
農 機 械 類	15.1	고구마 " (")	37.2
資 材 類	16.1	남자賃金 (1 시간 당)	672.5
肥 料 類	20.0	여자 " (")	520.9
農 藥 類	21.0	畚 (1 坪 당)	473.6
쌀 도 정 료	22.2	田 (")	307.7
겉보리쌀 도정료	20.3		
水 利 費	19.6		
配 合 飼 料	28.3		
家 畜 類	24.5		
租稅公課金및제부담금	30.9		
光 熱 動 力 費	25.7		
雜 費	19.1		
農 牛 賃 借 料	25.0		

價格 Parity 방식은 1975 ~ 79年 5個年 平均農家販賣價格을(1975 ~ 79年 農家販賣價格指數平均 / 1961 ~ 65年 農家販賣價格指數平均)의 比率로 나누어 1961 ~ 65年을 基準으로 해서 農家販賣價格을 구한 다음 이것을 (1980年 出荷期의 農家購入價格指數豫側值 / 1961 ~ 65年 農家購入價格指數平均)의 比率로 곱해서 Parity 방식에 의한 農家販賣價格을 計算하였다. 여기에 都賣마진率을 곱해서 Parity 방식에 의한 適正都賣價格을 구하였다. 農家販賣價格은 農協의 「農村物價總覽」에 의한 것이다.

消費者負擔許容 방식은

$$P_u = P_0 (1 + \xi_p \epsilon_Y \dot{Y}) \text{의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P_u = \text{구하고자 하는 가격}$$

$$P_0 = \text{基準價格}$$

$$\xi_p = \text{價格伸縮性係數}$$

$$\epsilon_Y = \text{所得彈性值}$$

$$\dot{Y} = \text{所得增加率}$$

P_0 는 1975年度 不變價格으로 나타낸 1975 ~ 77年度 平均價格이고 \dot{Y} 는 1975 ~ 77年度 3個年 평균에 대한 80年度 所得增加率인데 KDI의 예측대로 금년도 經濟成長率을 4%로 잡을 때 \dot{Y} 는 0.333으로 計測된다. 所得彈性値는 國立農業經濟研究所, 「農業觀測모델設定」, 1973. 3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價格伸縮性係數는 許信行, 金秉鐸, “價格伸縮性分析과 農產物需給調節” 「農村經濟」 3권 3호, 1980. 9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價格伸縮性係數가 研究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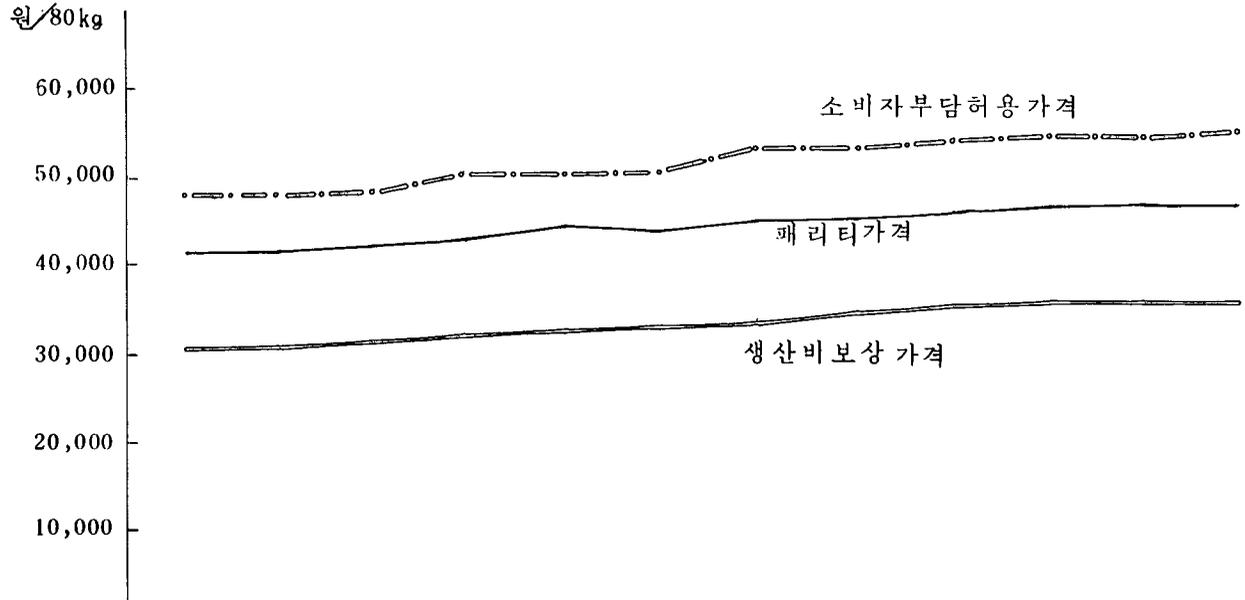
지 않거나 유의성이 거의 없는 품목인 쌀, 콩, 무우, 배추, 참깨
굴, 닭고기, 계란은 價格伸縮性係數 대신에 價格彈性值의 역수를 이
용하였다. 畜産物의 價格과 所得彈性值는 許信行, “主要畜産物需要
分析과 豫測”, 「農村經濟」, 1 권 3 호. 1978. 12의 자료를 이용
하였고, 價格伸縮性係數는 成培永, 金相鍾, “肉類의 需給價格流通”
「農村經濟」, 1 권 3 호, 1978.12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P_0 는 75年 不變價格水準에서의 消費者價格인데 이것에 도매
마진율/총마진율과 都賣物價指數 豫測值를 곱해서 消費者負擔許容
價格方式에 의한 適正都賣價格을 구했다. 都賣物價는 KDI 豫測대
로 34%¹²⁾ 上昇할 것이라 豫測하였다. 月別, 品目別, 適正價格을 試
算하여 나타내는 圖表는 다음과 같다.

2. 品目別 . 月別 生産費補償價格, 패리티價格, 消費者負擔許容價格 試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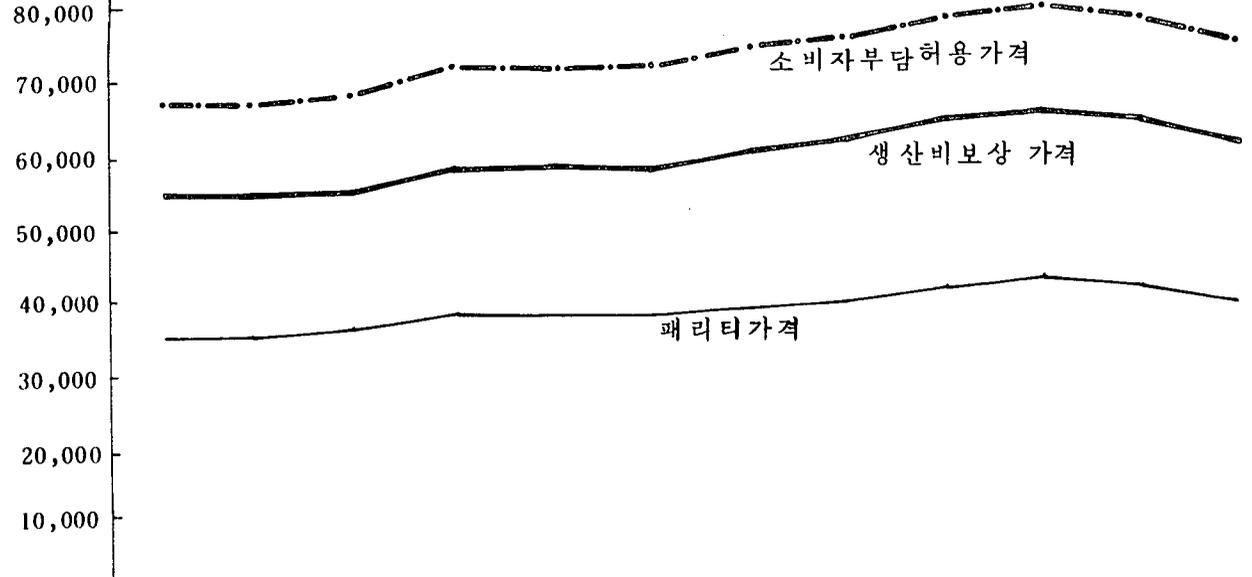
< 圖 2 >

쌀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1981									
	11	12	1	2	3	4	5	6	7	8	9	10
생산비보상가격	31,263	31,196	31,465	32,708	32,977	32,877	34,221	34,356	35,028	35,364	35,768	36,036
패리티가격	41,798	41,708	42,068	43,731	44,090	43,955	45,753	45,933	46,832	47,281	47,820	48,180
소비자부담허용 가	48,775	48,712	49,090	51,030	51,450	51,292	53,390	53,600	54,649	55,173	55,803	56,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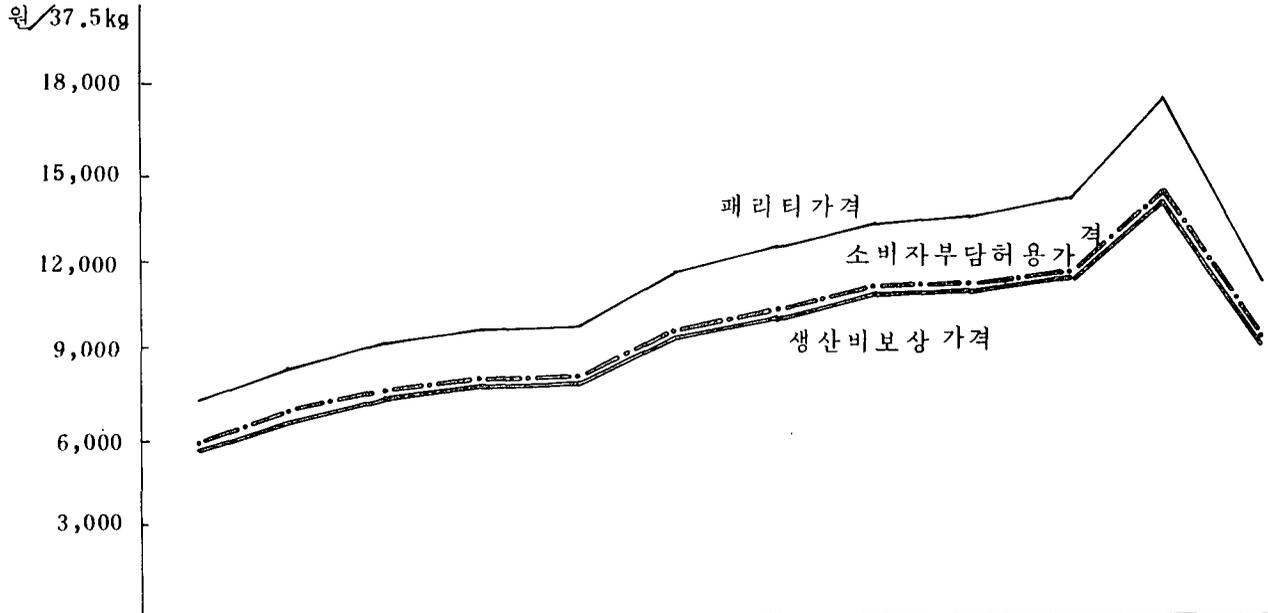
< 圖 3 > 공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원/1000



원 別 방 法	1980		1981									
	11	12	1	2	3	4	5	6	7	8	9	10
생산비보상가격	55,144	54,844	56,043	58,800	58,620	58,261	60,299	61,797	64,614	65,573	64,135	61,258
패 리 티 가 격	35,325	35,133	35,901	37,667	37,552	37,322	38,627	39,587	41,392	42,006	41,085	39,241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가	67,552	67,185	68,653	72,031	71,811	71,370	73,867	75,702	79,153	80,328	78,566	75,041

< 圖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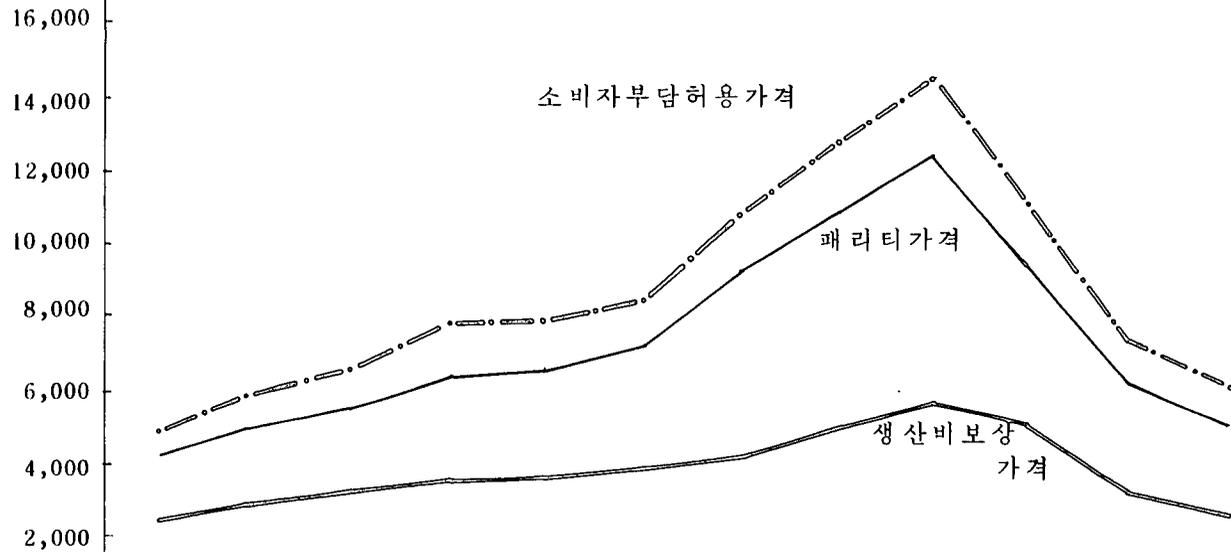
감자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1981					
	7	8	9	10	11	12	1	2	3	4	5	6
생산비보상가격	5,876	6,896	7,491	7,869	8,002	9,570	102,594	10,949	11,166	11,658	14,340	9,305
패 리 티 가 격	7,191	8,440	9,168	9,630	9,792	11,711	12,555	13,399	13,665	14,266	17,550	11,388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가	5,941	6,973	7,574	7,956	8,090	9,676	10,373	11,070	11,290	11,786	14,499	9,408

< 圖 5 > 원/37.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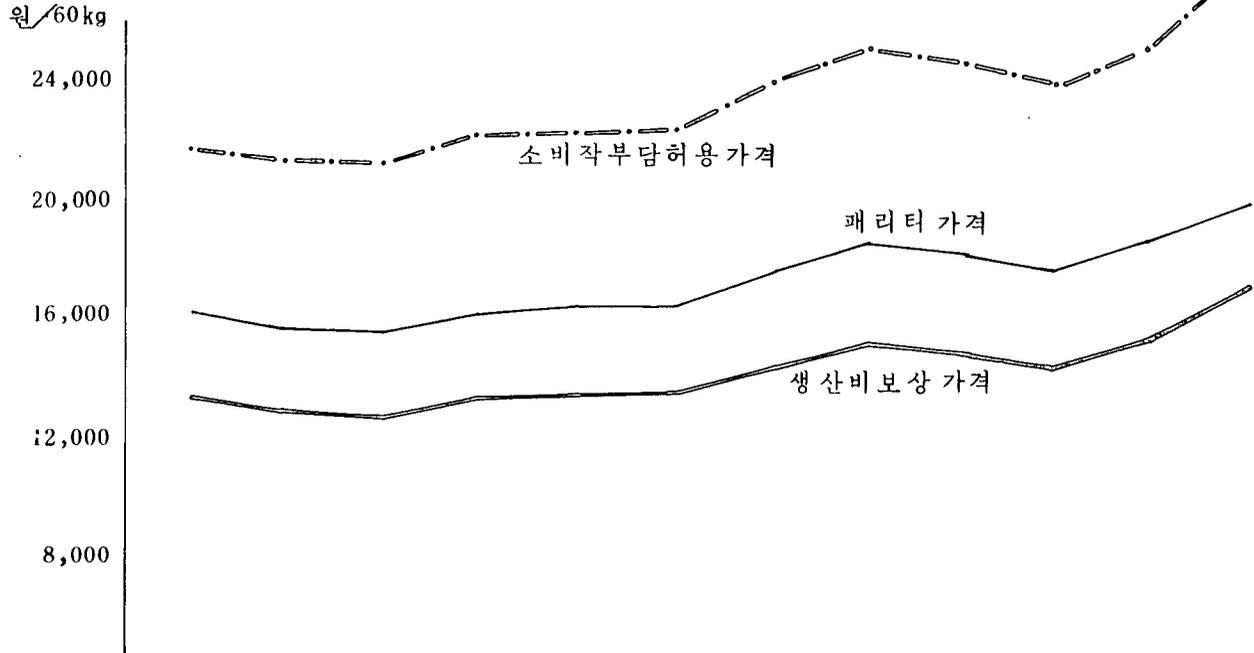
고구마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1981									
	11	12	1	2	3	4	5	6	7	8	9	10
생산비보상가격	2,313	2,758	3,096	3,639	3,663	3,924	5,083	6,025	6,894	5,238	3,484	2,843
패 리 티 가 격	4,241	5,086	5,677	6,672	6,717	7,195	9,320	11,048	12,641	9,604	6,388	5,213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4,959	5,912	6,638	7,801	7,854	8,414	10,898	12,927	14,781	11,230	7,469	6,096

< 圖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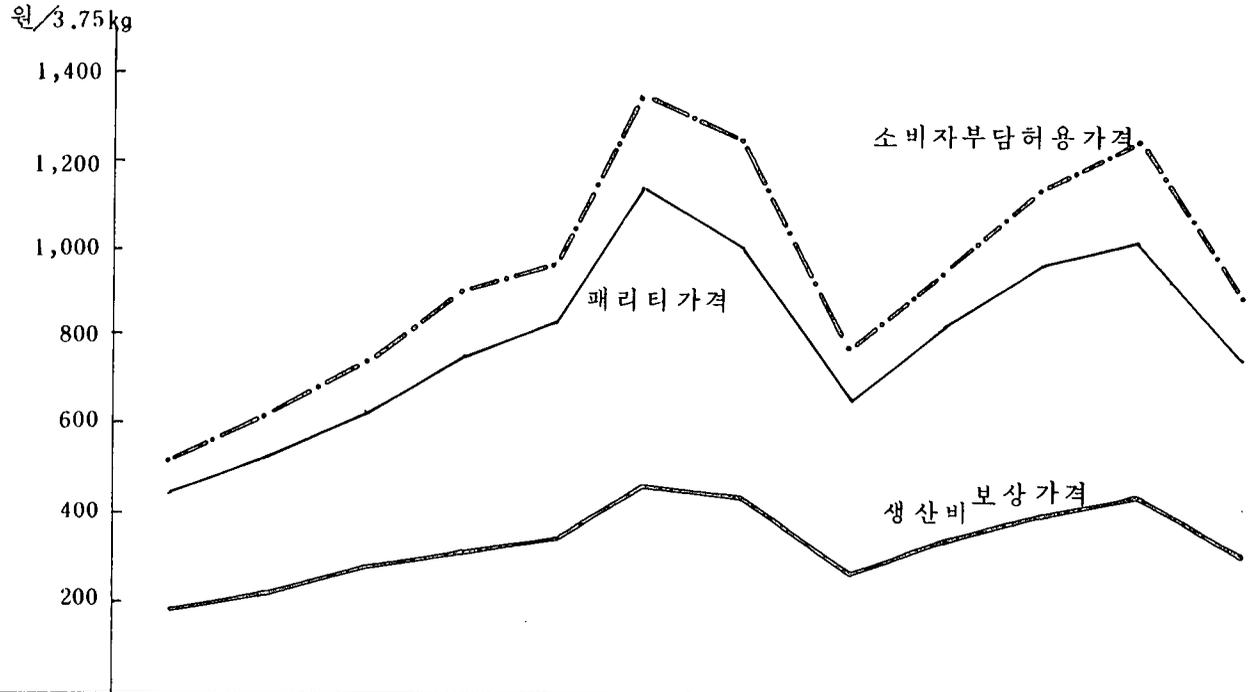
고추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1981									
	11	12	1	2	3	4	5	6	7	8	9	10
생산비보상가격	13,131	12,848	12,692	13,230	13,386	13,443	14,406	15,142	14,887	14,491	15,312	17,041
패 리 티 기 격	16,071	15,724	15,534	16,192	16,383	16,452	17,631	18,533	18,221	17,735	18,741	20,856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21,968	21,494	21,233	22,134	22,395	22,489	24,101	25,333	24,907	24,243	25,617	28,509

< 圖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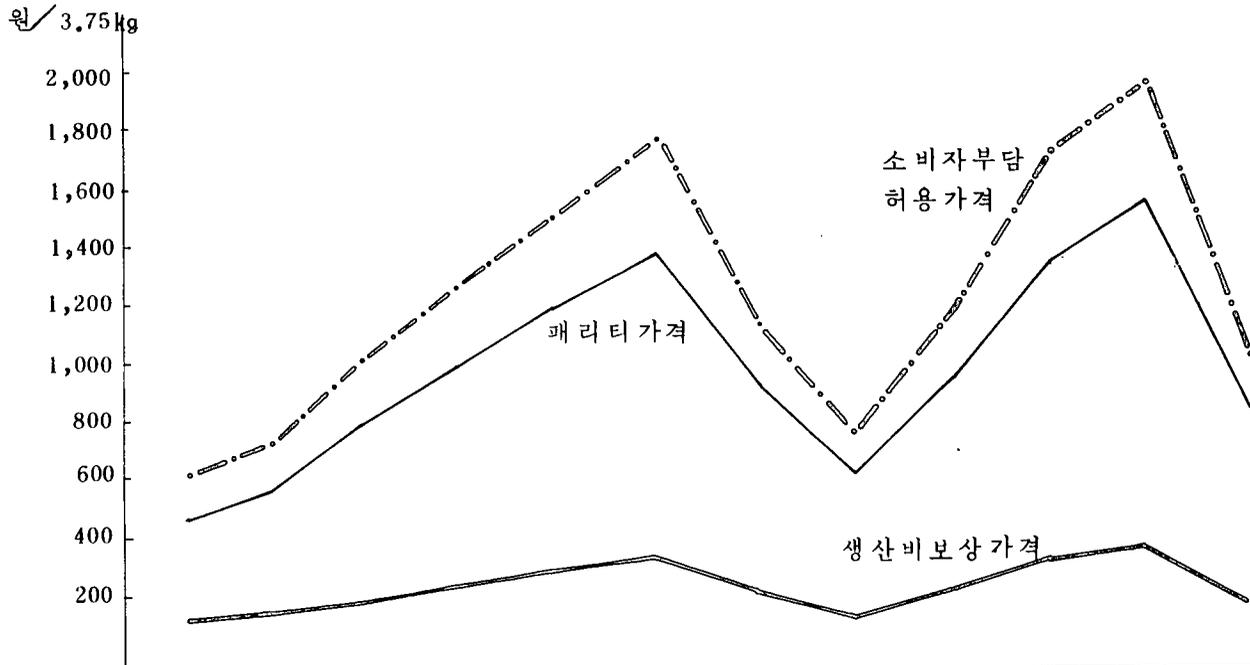
무우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11	12	1981 1	2	3	4	5	6	7	8	9	10
생산비보상가격	183	211	254	308	333	466	432	268	331	397	433	306
패 리 티 가 격	453	523	628	763	823	1,154	1,070	663	819	983	1,072	758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격	535	617	741	901	973	1,363	1,264	782	967	1,161	1,266	895

< 圖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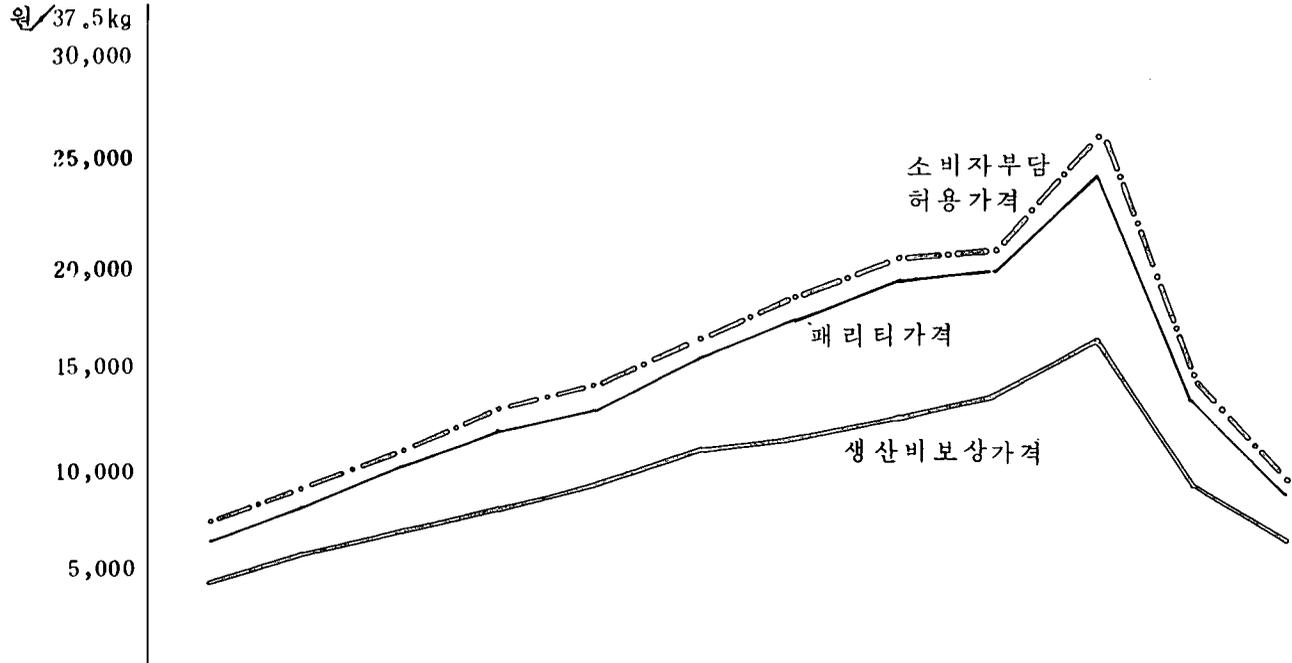
배추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11	12	1981 1	2	3	4	5	6	7	8	9	10
생산비보상가격	112	134	186	233	279	324	211	142	222	317	365	194
패 리 티 가 격	478	573	793	995	1,192	1,385	902	608	949	1,354	1,556	827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603	723	1,001	1,255	1,504	1,747	1,138	767	1,197	1,708	1,963	1,044

< 圖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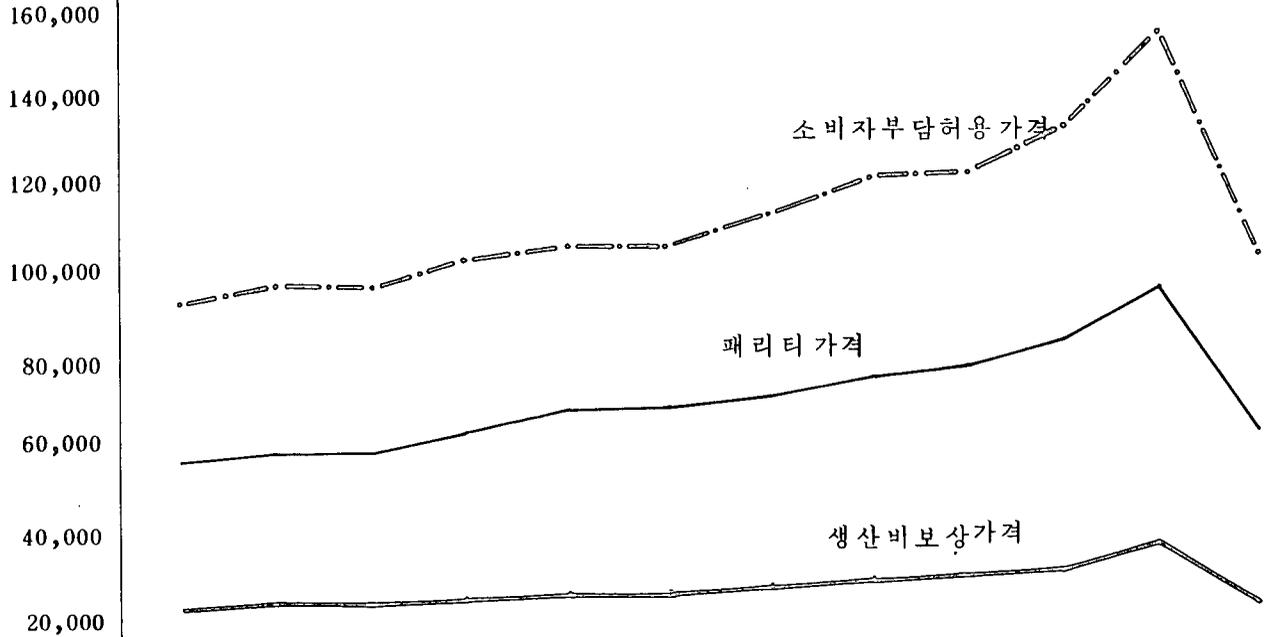
양파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1981					
	7	8	9	10	11	12	1	2	3	4	5	6
생산비보상가격	4,609	5,533	7,054	7,874	8,714	10,142	11,308	12,549	13,034	16,131	9,050	5,981
패 리 티 가 격	6,895	8,277	10,552	11,780	13,036	15,172	16,916	18,773	19,499	24,132	13,539	8,947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7,475	8,973	11,439	12,771	14,133	16,448	18,339	20,352	21,139	16,163	14,678	9,699

<圖 10> 37.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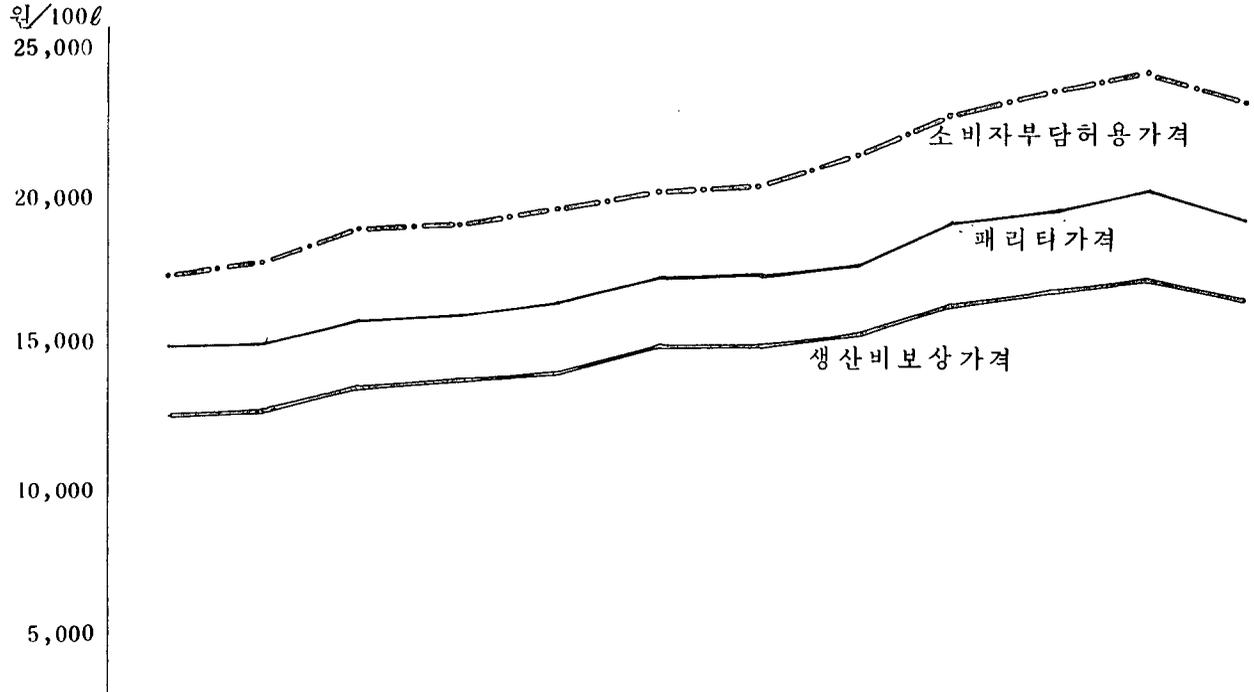
마늘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7	8	9	10	11	12	1981 1	2	3	4	5	6
생산비보상가격	21,560	22,208	22,182	23,193	24,514	24,514	26,043	27,909	28,764	30,889	35,683	23,581
패 리 티 가 격	58,054	59,798	59,729	62,450	66,009	66,009	70,125	75,149	77,452	83,174	96,082	63,497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93,847	96,667	96,554	100,953	106,706	106,706	113,361	121,482	125,205	134,454	155,321	102,645

< 圖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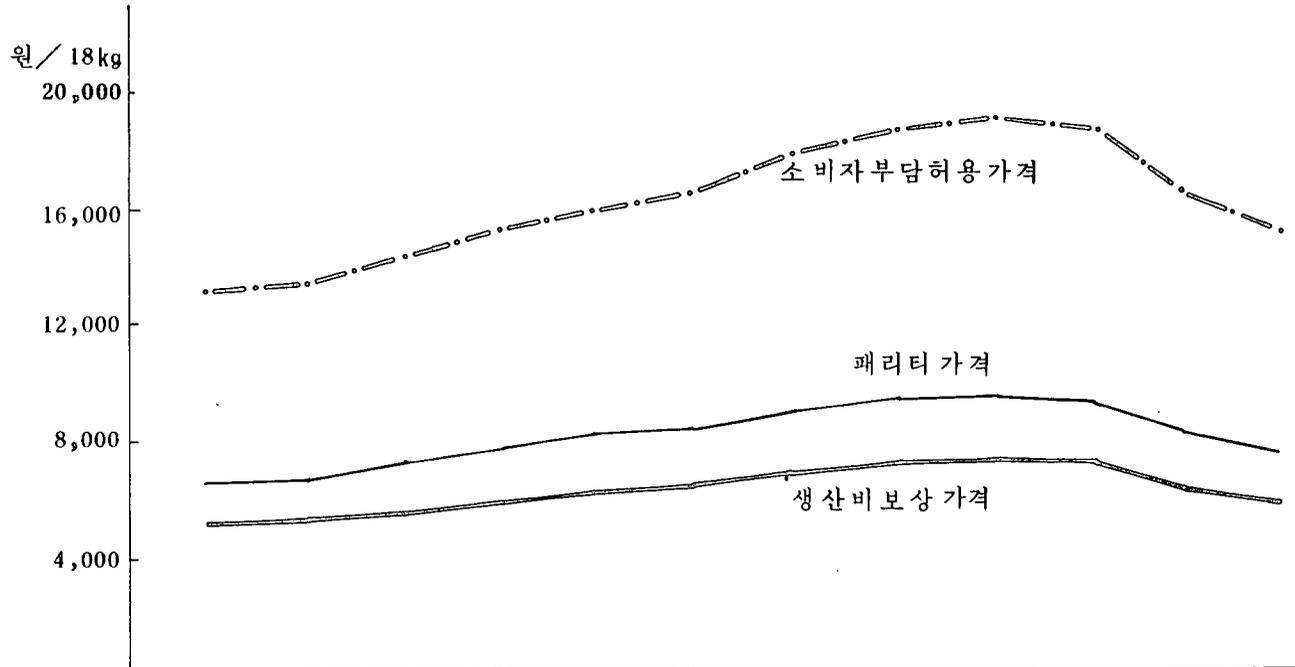
참깨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9	10	11	12	1981 1	2	3	4	5	6	7	8
생 산 비 보 상 가 격	125,476	126,215	134,048	135,083	139,812	147,202	147,497	151,783	162,720	167,154	171,587	165,380
패 리 티 가 격	177,495	148,714	157,943	159,162	164,735	173,442	173,790	178,840	191,726	196,950	202,174	194,860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격	,327	178,371	189,441	190,903	197,587	208,030	208,448	214,505	229,961	236,227	242,493	233,721

< 圖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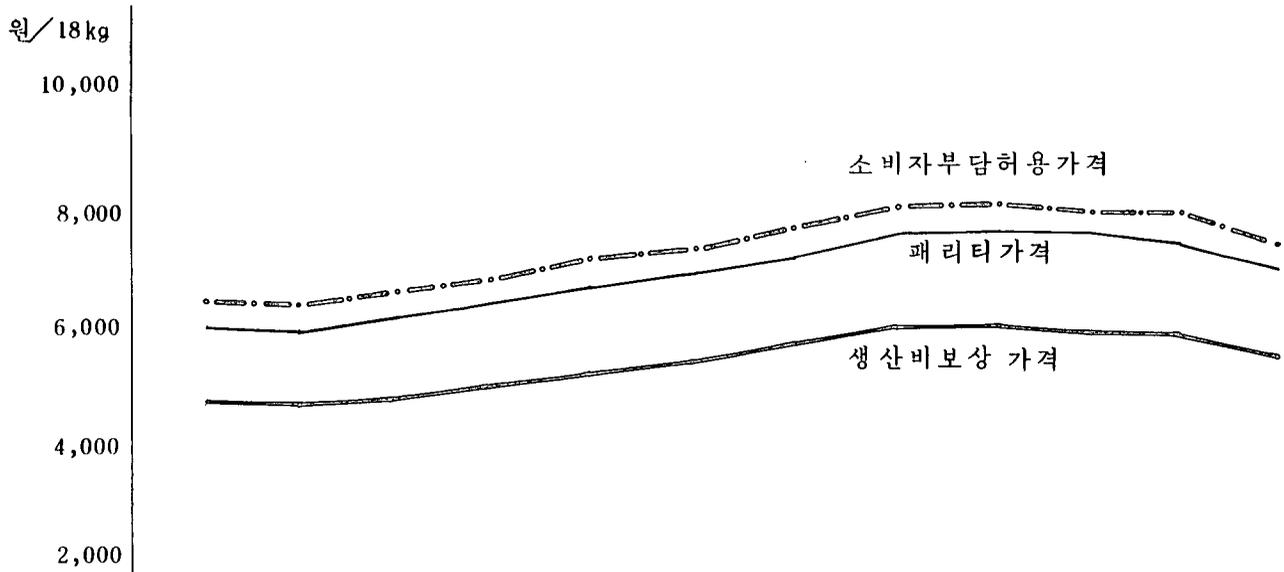
사과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11	12	1981 1	2	3	4	5	6	7	8	9	10
생산비보상 가격	5,075	5,227	5,602	5,912	6,223	6,477	7,004	7,314	7,441	7,333	6,515	6,014
패 리 티 가 격	6,600	6,798	7,285	7,689	8,093	8,423	9,108	9,512	9,677	9,537	8,473	7,821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13,039	13,430	14,392	15,190	15,989	16,641	17,994	18,792	19,118	18,841	16,739	15,451

< 圖 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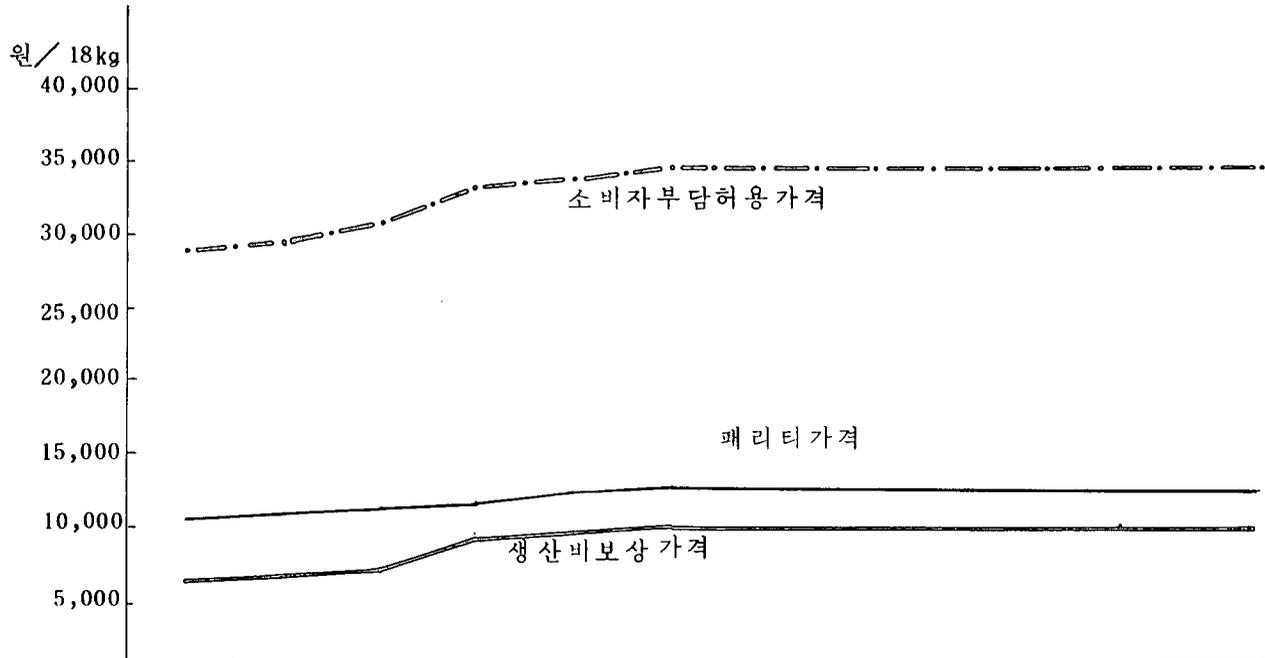
배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11	12	1981 1	2	3	4	5	6	7	8	9	10
생산비보상 가격	4,677	4,624	4,773	4,950	5,206	5,345	5,677	5,906	5,928	5,890	5,832	5,399
패 리 티 가 격	5,991	5,923	6,114	6,340	6,669	6,847	7,271	7,566	7,593	7,545	7,470	6,915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6,417	6,344	6,549	6,791	7,143	7,334	7,788	8,104	8,133	8,082	8,001	7,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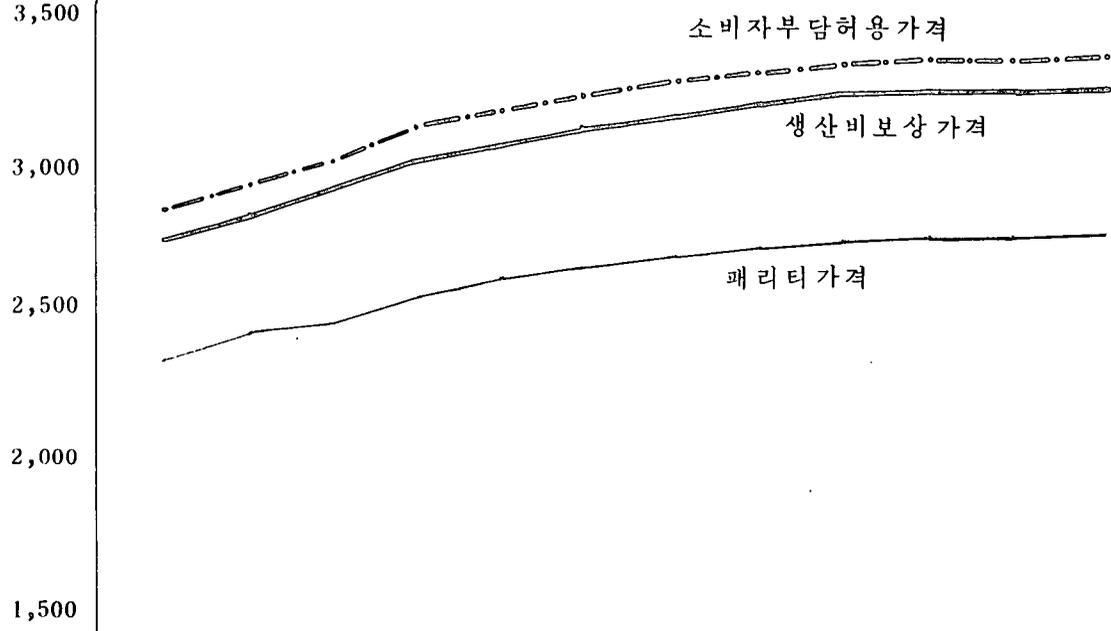
< 圖 14 >

월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月 別 방 法	1980 11	12	1981 1	2	3	4	5	6	7	8	9	10
생산비보상가격	6,937	7,382	7,664	9,119	9,446	9,801	9,801	9,801	9,801	9,801	9,801	9,801
패 리 티 가 격	10,315	10,977	11,397	13,560	14,046	14,573	14,573	14,573	14,573	14,573	14,573	14,573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28,183	29,993	31,138	37,048	38,378	39,818	39,818	39,818	39,818	39,818	39,818	39,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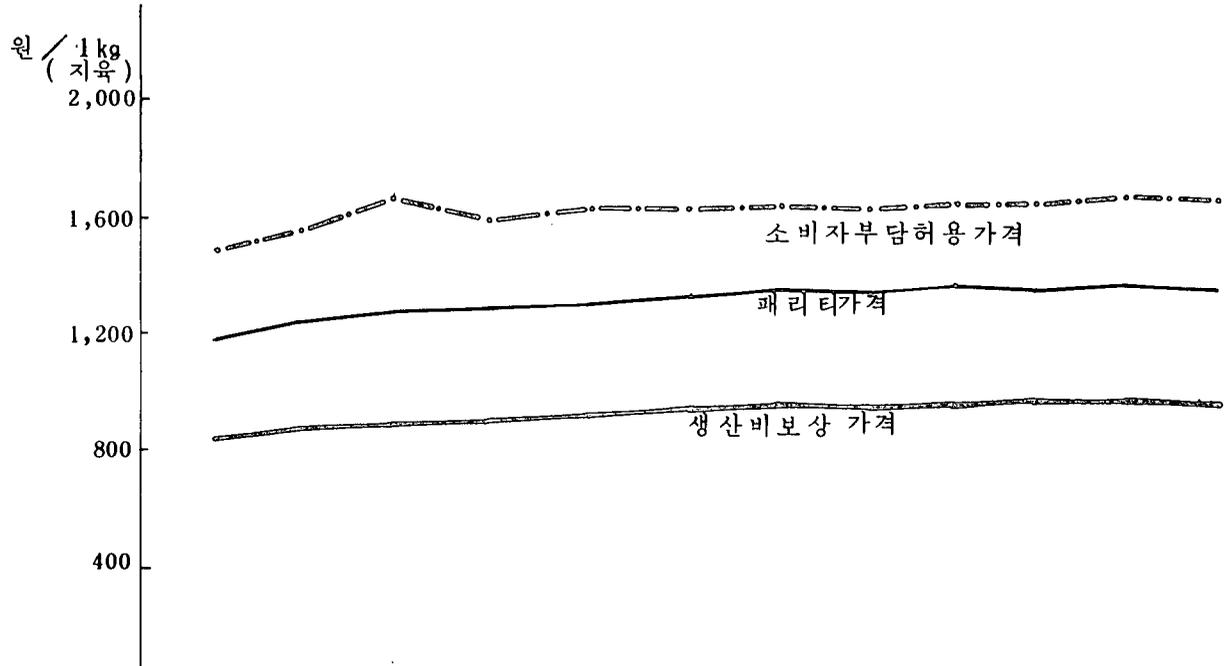
< 圖 15 > 쇠고기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원 / 1 kg (지육)



월 별 방 법	1980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생산비보상 가격	2,747	2,837	2,911	3,035	3,078	3,137	3,184	3,202	3,240	3,255	3,255	3,271	3,100
패 리 티 가 격	2,328	2,404	2,467	2,567	2,609	2,659	2,698	2,714	2,745	2,758	2,758	2,771	2,627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2,843	2,936	3,013	3,135	3,187	3,248	3,296	3,315	3,353	3,369	3,369	3,385	3,209

< 圖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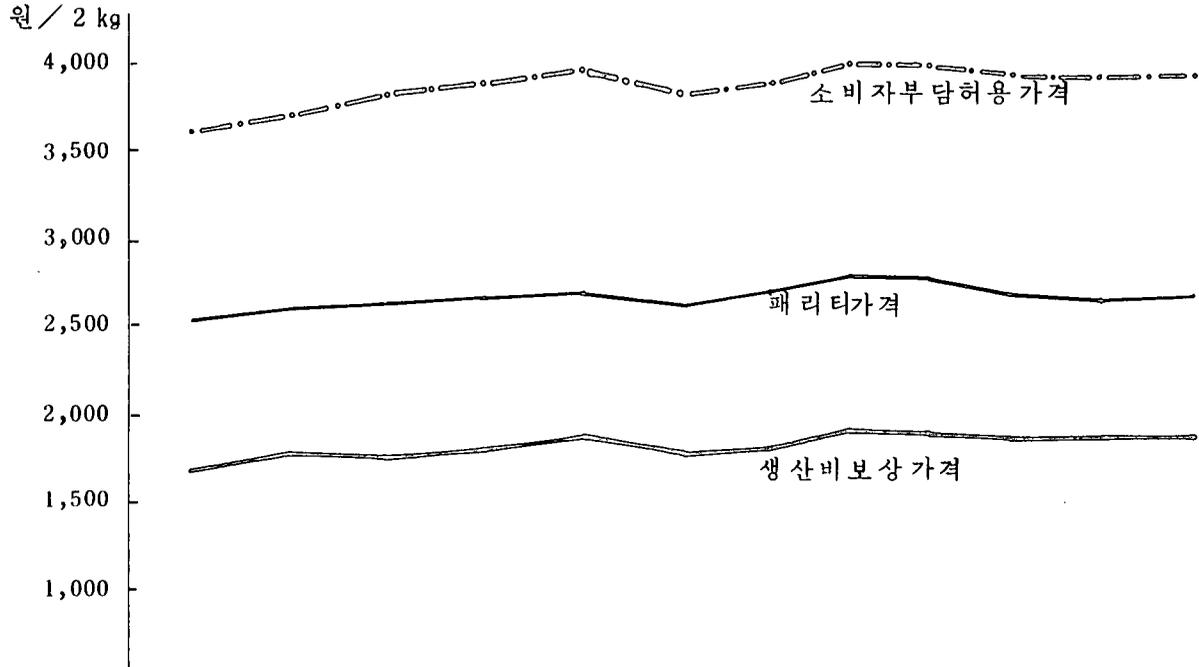
돼지고기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생산비보상가격	843	882	890	899	911	921	937	930	941	944	951	946	916
패 리 티 가 격	1,197	1,253	1,265	1,276	1,294	1,308	1,331	1,321	1,336	1,341	1,350	1,344	1,301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1,490	1,560	1,667	1,589	1,628	1,628	1,657	1,644	1,664	1,670	1,682	1,673	1,620

< 圖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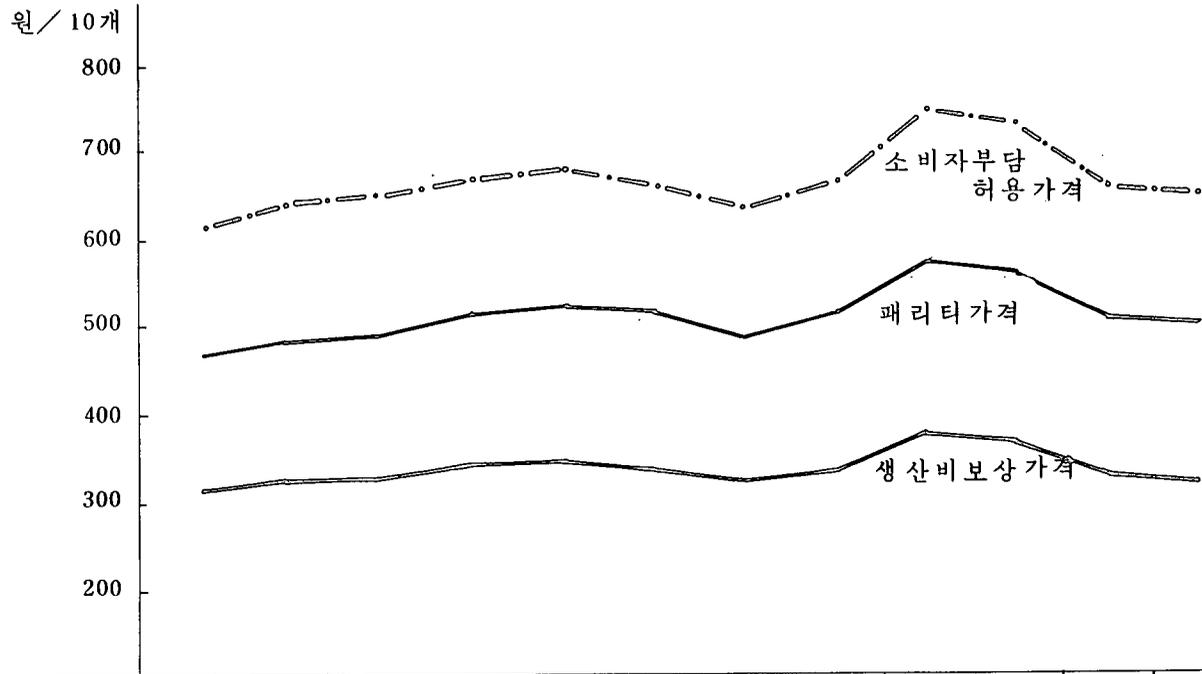
닭고기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생산비보상가격	1,719	1,787	1,809	1,842	1,892	1,830	1,859	1,929	1,913	1,855	1,852	1,855	1,848
패 리 티 가 격	2,524	2,624	2,657	2,706	2,779	2,687	2,730	2,833	2,810	2,725	2,719	2,725	2,714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3,630	3,774	3,821	3,891	3,997	3,864	3,926	4,075	4,040	3,919	3,911	3,919	3,903

< 圖 18 >

계란 月別 생산비보상가격, 패리티가격, 소비자부담허용가격



월 별 방 법	1980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생산비보상가격	311	324	325	344	350	340	327	341	382	374	340	333	341
패 리 티 가 격	468	487	489	518	526	511	491	514	575	562	512	502	513
소 비 자 부 담 허 용 가	612	636	639	676	687	668	642	671	751	734	669	655	670

IV. 適正價格 維持對策¹³⁾

1. 穀類

쌀은 生産者인 農民의 農業所得에서 51.5% (1978年) 를 차지하고 있고 消費者에게도 家計支出費中에서 單一品目으로서는 제일 큰 比重을 차지할 정도로 國民全體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米價變動은 國民經濟에 큰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生産者受取價格이나 消費者 支払價格이 適正價格水準에서 安定될 必要가 있다

現在 政府에서 實施하고 있는 二重穀價制는 生産者와 消費者를 同時에 보호할 수 있는 좋은 施策이라고 할 수 있지만 政府의 財政負擔이 크기 때문에 非農業分野에서 많은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現行 이 制度를 계속 實施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 이유로서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主穀의 自給達成을 위한 制度이다. 1976年 以後 쌀의 生産量이 大幅 늘어나게 된 것은 순조로운 氣象條件과 多收穫品種의 普及 및 營農技術의 發達에도 基因하지만 二重穀價制를 통한 高米價政策이 農民의 增産意慾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要因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主穀의 自給達成은 安定圈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主穀의 自給達成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食糧安保와 쌀 導入에 所要되는 外貨支出을 절약하기 위해 主穀自給을 위한 價格支持

政策이 필요하다.

<表 3> 쌀의 自給度

年 度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自給率(%)	82.5	91.6	92.1	90.8	94.6	100.5	103.4	103.8	86.0

資料： 農水産部, 「農政手帖, 1980」.

둘째, 農村의 所得向上과 都市와의 所得均衡을 위해서 二重穀價制가 필요하다.¹⁴⁾ <表 4>에서와 같이 農家 1家口當 所得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人當 農家所得은 都市水準보다 상당히 낮다. 都市의 資本 및 財産所得이 많은 高所得層을 포함하여 農村과 比較한다면 所得에 차이가 클 것이며 工業化 위주의 開發政策過程에서 都·農間의 所得隔差는 深化一路에 있다. 앞으로 工業化가 진전되고 특히 農村工業이 發達함에 따라 農外所得이 增加할 것으로 예상되나 農村工業의 諸 制約要因을 감안할 때 상당한 期間동안은 農業所得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 農業所得의 가장 중요한 要因은 農業交易條件의 改善에 달려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價格支持政策이 필요하다. 收穫期의 價格暴落을 防止하고 端境期의 價格暴騰을 막기 위해 二重穀價制는 필수적이다.¹⁵⁾ 쌀은 價格에 대한 需要와 供給의 彈力性이 모두 작아서 需要와 供給量의 작은 變化에도 價格變動은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現金支出要求가 收穫期에 몰려 있어서 價格이 暴落하여 生産費 이하로 내려갈 것은 屢연한 사실이다.

〈表 4〉 都農間の 所得對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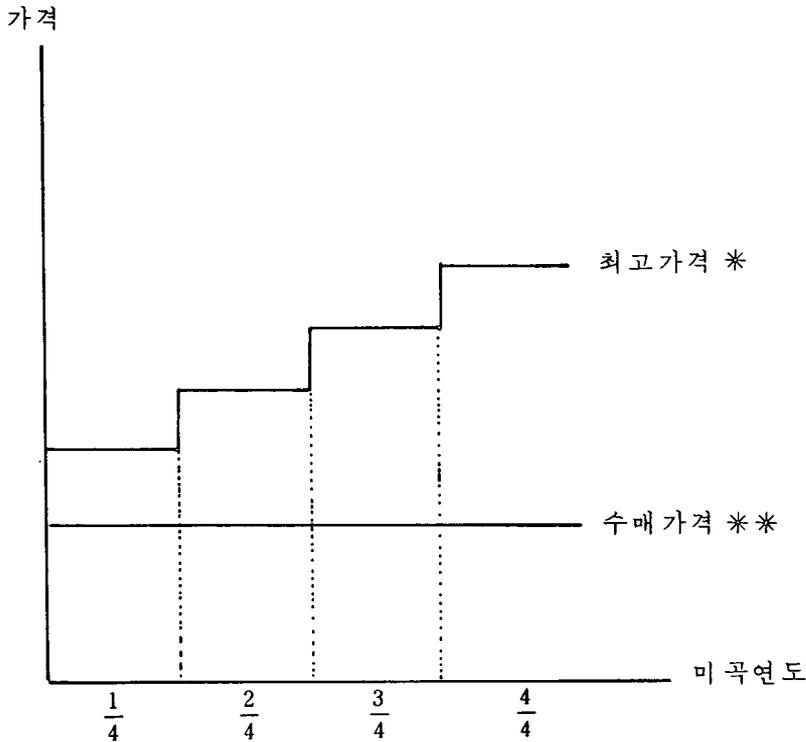
單位：千圓

年度	家口當所得(A)			家口當人員(B)		1人當所得(A/B)		
	農家(a)	都市(b)	對比(a/b)	農家	都市	農家(c)	都市(d)	對比(c/d)
1971	356.4	451.9	78.9	5.83	5.28	61.1	85.6	71.4
1972	429.4	517.4	83.0	5.71	5.27	75.2	90.2	76.6
1973	480.3	550.2	87.4	5.72	5.25	84.0	104.8	80.2
1974	674.5	644.5	104.7	5.66	5.21	119.2	123.7	96.4
1975	872.9	859.3	101.6	5.63	5.15	155.2	166.9	92.9
1976	1,156.3	1,151.8	100.4	5.54	5.05	208.7	228.1	91.5
1977	1,432.8	1,405.1	102.0	5.52	4.76	259.6	295.2	87.9
1978	1,884.2	1,916.3	98.3	5.18	4.68	363.7	409.5	88.0

資料：農水産部，「農政手帖，1980」.

短期的으로는 現在の 二重穀價制가 바람직하나, 長期的으로 볼 때 營農의 規模가 커지고 技術이 發達되어 生産費 節減이 가능해질 수 있고, 消費者 즉 都市勤勞者의 所得이 향상됨에 따라 <圖 19> 와 같은 收買 - 最高價格制가 좋을 것이다. 이 제도는 生産者는 生産費를 충분히 補償받고, 消費者는 이 生産費에다 正當한 유통마진을 합한 價格을 負擔함으로써 政府의 財政負擔을 덜어주자는데 있다.

<圖 19> 米穀의 收買 - 最高價格制



* 收買價格 + 分期別流通마진累積.

** 生産資材費 + 都賣勤勞者에 相當한 勞動報酬.

현재까지의 糧特赤字는 生産者를 위해서 높은 價格으로 收買한 것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消費者를 위한 物價安定을 위해 낮은 價格으로 放出한데 크게 基因하고 있다.¹⁶⁾ 이제까지 放出價格이 對農民收買價格을 넘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 부담을 消費者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米價가 國際價格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生産資材값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고 낮은 生産基盤施設과 金融 및 流通上의 각종 支援施策이 모자라는데 원인이 있다. 二重穀價制 實施에 따른 糧特赤字는 대부분 韓銀借入에 依存함으로써 인플레이를 유발시키는 등 많은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다. 앞으로 借入金은 一般會計에서 負擔하도록 하는 同時에 財政 및 物價安定을 기하기 위해서 韓銀借入을 억제하고 糧穀證券發行制度를 強化하여 糧穀管理上의 不足한 資金을 調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⁷⁾

2. 菜蔬類 (무우, 배추)

무우와 배추는 需要와 供給面에서 각각 特殊性을 내포하고 있다. 供給上의 특징으로서는 生産供給이 季節性을 가지고 있으면서 腐敗되기 쉬워 收穫後 長期間의 保管과 가공이 어렵다. 菜蔬는 新鮮도가 매우 重要한데 이것의 維持가 어렵고 價格에 비해 부피와 重量이 커서 輸送하는데 상당한 危險負擔이 따른다. 그런 반면에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食生活水準이 向上되고 家電製品의 擴大普及 등으로 菜蔬의 需要는 年中 平準化되어 가고 있다.

<表 5 >

쌀 收買 및 放出實績 (80 kg)

米 穀 年 度	販 賣 原 価			放出價格 (B)	缺 損 (B) - (A)	對 比 (B) / (A)
	收買價格	操作費	計(A)			
1971	7,000	664	7,664	6,500	△ 1,164	84.8
72	8,750	738	9,488	9,500	12	100.1
73	9,888	792	10,680	9,500	△ 1,180	88.9
74	11,377	915	12,292	11,264	△ 1,028	91.6
75	15,760	1,448	17,248	13,000	△ 4,248	75.4
76	19,500	1,996	21,496	16,730	△ 4,766	77.8
77	23,200	2,424	25,624	19,500	△ 6,124	77.2
78	26,000	3,372	29,632	22,420	△ 7,212	75.7
79	30,000	5,088	35,088	26,500	△ 8,588	75.5
80	36,600	7,126	43,960	(중) 26,500	△ 17,460	60.3
				(상) 32,000	△ 11,960	72.8

資料： 農水產部，「農政手帖，1980」。

이런 需要의 非彈力性 때문에 生産量의 작은 變化에도 價格은 매우 不安定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菜蔬類에 대한 生産施設이 미약하고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더우기 適切한 市場情報 및 農業觀測制度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한 해의 菜蔬價格이 비쌀 경우 그 다음해에는 많은 農民들이 다투어 栽培함으로써 出荷홍수를 낳게 되고 그 익년에는 다시 모두 減産함으로써 價格이 暴騰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¹⁸⁾ 流通構造의 미비로 生産地와 消費地의 價格差異가 상당히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菜蔬類의 價格安定을 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이것을 變化시키기 위해서는 長短期的으로 몇가지 方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長期的으로는 主産團地를 造成하거나 現在의 主産地 중심으로 菜蔬園藝組合 등을 독자성있게 育成하여 生産農家로 부터 次期年度の 生産計劃에 대한 統計를 蒐集하고 播種前에 生産調節이 可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主産團地를 造成하면 農民들이 새로운 技術을 받아들이기 쉽고 種子 및 資材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生産費를 절감할 수 있다. 團地를 選定할 때는 市場과의 거리, 自然條件, 栽培技術水準, 個別農家에서 菜蔬類收入이 차지하는 比重, 勞動力生産 등을 事前에 考慮해서 選定해야 한다.¹⁹⁾ 團地를 造成하면 零細한 非專門農家에 의해서 분산되어 生産하는 것보다 市場情報도 쉽게 얻을 수 있다. 市場情報은 우선 生産者에게 어떤 商品을 얼마만큼 生産하고 生産된 農產物은 언제, 어느곳에다 파는 것이 가장 유

리한 것인가를 알게해 줄 것이므로 全國 市場圈을 最大한 完全
 競爭化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正確한 市場情報의 提供은 一部
 商人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不公正去來, 去來制限 등의 현
 상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해주며, 流通費用과 時間의 節減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菜蔬類 生産量은 栽培面積에 의해서 많
 은 영향을 받지만 他作物에 비해서 單位面積當 收量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價格安定을 위해서는 段收의 安定이 絶대로
 必要하고 이를 위해서는 灌排水施設 등 生産基盤造成과 生産資材
 의 支援, 技術指導 등으로 段收를 높은 水準으로 安定시켜야 한
 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流通構造改善에 보다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배추의 경우 어떤 때는 消費者값이 生
 產地값보다 8~9²⁰⁾ 倍나 비쌀 정도로 流通構造上的 많은 問題點을
 나타내고 있다. 流通構造上的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農協을
 통한 系統出荷를 계속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農
 協은 生産資材를 싸게 供給하고 資金支援 등을 계속 實施하도록
 하며, 生産 및 經營指導와 系統出荷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專
 門指導要員의 양성 및 배치가 必要하다. 한편 產地出荷組織을 強
 化하는 同時에 產地에서의 生産物을 規格化 또는 標準化 시키도
 록 한다. 規格化, 標準化가 實施되지 않으면 市場情報가 제대로 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商去來体制上에서 많은 混亂이 생겨 消費
 者, 生産者 모두가 損害를 보기 마련이다. 현재 菜蔬類의 대부분이
 系統出荷나 法定都賣市場 보다는 類似都賣市場에서 去來되고 있다. 이 類

似市場을 整備, 市場施設擴充, 衛生施設의 改善이 必要하다.²²⁾ 대부분의 市場이 取扱物量에 비해 施設이나 場所가 狹小하여 價格形成, 集荷, 分散機能 등 公正去來를 유도하는데 많은 問題點이 있다. 施設擴充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資金支援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市場內에서의 各種 賦課金を 다소 引下하여 不公正去來에 대한 法的規制를 強化하도록 하여야 한다.²³⁾

이런 여러가지 長期的인 對策以外에 短期的인 對策으로서 政府는 生産費補償水準인 基本價格과 消費者가 負擔할 수 있는 指導價格을 정하고 市場價格이 中間에서 움직일수 있도록 間接的인 最善의 方法을 強求하여야 한다 <圖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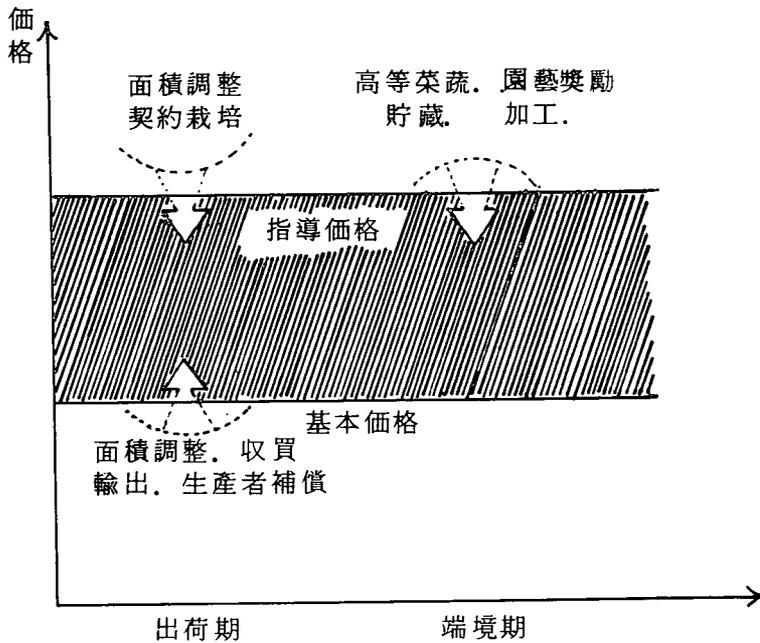
만일 市場價格이 基本價格 以下로 下落이 豫想되면 政府에서 一時收買 하거나 生産費 直接補償方法을 동원하여 供給量縮小에 努力하고, 市場價格이 指導價格 以上으로 上昇이 豫想될 때는 部分的인 契約栽培를 통해 供給量 擴大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特用作物 (양파, 마늘, 고추, 참깨)

양파, 마늘, 고추, 참깨는 需要와 供給面에서 무우, 배추와 거의 같은 特性을 가지고 있다. 供給面에서 볼 때 收穫時期가 集中되어 있고, 腐敗되기 쉬우며 生産基盤施設의 未備와 流通構造의 不合理性으로 價格의 變動幅이 다른 農產物에 비해 대단히 크다. 우리 나라는 이들 農產物의 많은 供給量이 收穫期에 商品化되고 있으나 需要는 年中, 平準化되어 있기 때문에 月別價格振幅은 매

<圖 20 >

基本—指導價格制 (무우, 배추)



우 크다. <表 6 >에서 마늘의 경우 收穫期인 6, 7월에 64.4%가 商品化되나 都市家口 購入率은 골고루 퍼져 있다.

價格을 安定시키기 위한 長期的인 對策으로서 무우, 배추의 경우와 거의 같다. 主産團地를 造成하고 生産基盤施設을 위한 投資를 擴大하여 生産量을 安定시키고 流通體制를 再整備하여 價格을 安定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作物, 즉 양파, 마늘, 고추, 참깨는 무우, 배추 등에 비해서 相對的으로 부피가 작을 뿐만 아니라 腐敗性이 낮아 貯藏管理 및 輸送이 便利하므로 收買備蓄制度를 積極活用하여 價格을 安定시켜야 한다. 市場價格이 生産者保護

<表 6 > 經濟作物의 月別 商品化率과 都市家口 購入率

(%)

	고 추		마 늘		양 파		참 개	
	상 품 ¹⁾ 화 율	도시가구 ²⁾ 구입율						
1	2.2	0.8	0.5	1.2	2.8	4.7	1.4	5.2
2	1.9	1.1	0.5	1.5	0.4	2.1	0.7	4.2
3	0.5	3.2	—	2.7	—	2.1	0.6	4.5
4	0.6	5.1	0.1	3.6	—	2.8	0.1	6.2
5	0.8	4.3	—	6.4	3.7	10.7	—	5.2
6	—	3.8	35.8	17.5	28.4	20.8	—	4.4
7	17.9	4.4	28.6	21.4	22.3	24.3	—	5.3
8	11.0	6.9	8.9	11.3	9.7	15.1	—	5.4
9	14.6	18.5	16.5	6.9	7.5	8.2	15.6	15.3
10	23.2	19.9	8.3	6.6	7.0	5.4	34.8	14.9
11	18.1	19.8	4.8	11.9	11.1	2.5	18.2	19.0
12	9.2	12.2	1.0	8.9	7.1	2.3	28.6	10.4

註 1) 農協中央会, 「農産物商品便覽」. 1979. 12.

2) 農協中央会, 「全國都市家口의 農産物購入狀況調查報告」,
74 ~ 79平均值.

價格水準 以下로 내려가면 政府가 介入하여 收買하고 市場價格이 消費者保護價格水準 以上으로 높아지면 放出하여 價格을 安定시키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月別價格振幅을 상당히 緩和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年平均價格이 上昇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收買備蓄事業은 價格安定效果 以外에 여러가지 效果를 가져온다.²⁴⁾ 먼저 生産者의 所得保護效果를 들 수 있다. 즉 生産者는 (收買價格 - 推定農家販賣價格) × 收買量 만큼의 直接的인 效果를 얻을 수 있다. 農民의 所得增大效果는 2~3次商品에 대한 有効需要의 增大로 나타날 可能性이 있어 결국 이 部分에 대한 雇傭機會도 擴大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收買價格으로 增産效果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收買로 인한 價格引上率 = $\frac{\text{收買量}}{\text{商品化量}}$ × 價格伸縮性係數이다.

다음으로 消費者負擔減少效果를 얻을 수 있다. 만약 端境期에 收買備蓄品目的 放出이 없다고 하면 消費者는 暴騰한 價格으로 商品을 購入하지 않으면 안되어 消費者에게 많은 負擔을 안겨주게 된다. 放出로 인하여 消費者는 (推定小買價格 - 放出價格) × 放出量 만큼의 直接的인 效果를 얻을 수 있고 放出로 인한 價格引下效果는 $\frac{\text{放出量}}{\text{流通量}}$ × 價格伸縮性係數이다. 마지막으로 流通마진의 減少效果를 들 수 있다. 備蓄對象品目들은 食糧作物에 비하여 腐敗性이 크며 流通過程上 損耗率이 높아서 流通마진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流通施設의 未備와 商人들의 不公正去來로 流通마진이 必要以上으로

높아지는 경향도 있다. 備蓄은 政府나 그 代行機關이 系統組織을 통해서 蒐集, 保管, 販賣하고 있기 때문에 蒐集段階에서만 아니라 分配過程에서도 다같이 流通마진이 減少한다.

지금까지는 收買資金 不足 등으로 收買備蓄事業이 원활하지 못했다. 따라서 現在 備蓄資金으로 活用中인 農産物價格安定基金을 더욱 擴大하여 收買備蓄량을 늘리도록 하고 이들 農産物を 수용할 保管, 貯藏施設을 擴充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收買備蓄이 어려울 때는 出荷調整을 擴大實施한다. 즉 農家에다 支援金を支給하여 農家保管, 出荷遲延을 하도록 하여 洪水출하에 의한 價格下落을 防止하게 한다. 國內處理가 어려울 정도로 生産이 過剩되면 輸出補助金を 支援하던지 해서 輸出을 장려하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國內供給이 모자라서 價格暴騰現象이 일어나게 될 때는 一部輸入을 하게 한다. 그러나 이들 品目들은 價格水準만 安定되면 國內自給이 可能하므로 國內生産基盤을 擴大해서 生産量を 安定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畜産物²⁵⁾

最近 20年間 우리 나라는 쇠고기를 비롯한 肉類의 消費가 크게 늘어났다. 經濟成長과 所得增大에 따른 食生活 패턴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表 7>에서 보듯이 쇠고기의 消費는 1970 ~ 79年期間 동안 3.1 배 늘어났고 豚肉은 2.7 배, 鷄肉은 2.0 배, 鷄卵은 1.7 배로 늘어났다. 一般的으로 國民所得이 높아지

<表 7 >

年度別 畜産物 消費推移

	牛 肉		豚 肉		鶏 肉		鶏 卵	
	物 量	1人當	物 量	1人當	物 量	1人當	物 量	1人當
	kg	kg	kg	kg	kg	kg	萬个	个
1961	13,303	0.5	60,043	2.3	8,533	0.7	81,807	31
1965	27,261	1.0	55,881	2.0	14,458	0.5	85,579	30
1970	37,340	1.2	82,546	2.6	45,177	1.4	245,606	76
1971	39,484	1.2	80,880	2.5	49,997	1.5	242,600	74
1972	40,229	1.2	90,230	2.7	54,266	1.7	279,000	183
1973	44,919	1.4	90,126	2.7	51,801	1.6	250,000	73
1974	51,506	1.5	95,353	2.7	53,269	1.6	225,500	79
1975	70,292	2.0	98,848	2.8	55,594	1.6	289,600	82
1976	75,533	2.1	109,046	3.0	60,886	1.7	304,800	85
1977	81,623	2.2	141,311	3.9	73,052	2.0	355,200	97
1978	114,731	3.1	177,984	4.8	82,189	2.2	374,300	101
1979	113,827	3.0	225,307	6.0	89,723	2.4	423,100	110

資料： 農水産部，「農政手帖」，1980。

면 新鮮食料品과 高蛋白質食品에 대한 需要는 다른食品需要 보다
 도 그 增加率이 훨씬 커지는 경향이 있다. <表 8>에서 보는바
 와 같이 一般的으로 畜産物은 所得彈性值가 커서 앞으로 所得과
 人口增加에 따른 畜産物 消費는 계속 增加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쇠고기의 消費가 急增하여 78年度에는 總消費量의 35%나
 輸入하기에 이르렀고, 돼지고기 價格은 79年度末의 農家販賣價
 格이 그 前年度 價格의 1/3水準으로 暴落하는 등 畜産物 價格
 과 需給은 굉장히 不安定한 상태이다. 畜産物의 價格과 需給을 安
 定시키기 위해서는 長短期的으로 많은 努力이 必要하다. 畜産物 價
 格을 安定시키기 위한 基本的인 價格政策은 價格形成이 原則의으
 로 市場의 自律機能에 依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政府는 이 價
 格 메카니즘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需要 및 供給量을 適
 切히 調節하는 등 많은 補助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收
 買備蓄制度를 擴大實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畜産物은 他農
 産物과 달리 季節性이 매우 적고 또 冷凍에 의한 長期保管과,
 輸送 및 操作이 비교적 容易하여 備蓄에 대한 市場管理가 쉽다.
 먼저 家畜飼育農家保護를 위하여 安定帶의 下限價格을 정하고 여
 기에 流通마진과 季節振幅을 考慮하여 消費者保護價格인 上限價格
 을 決定하여 市場價格이 安定帶 속에서 自由롭게 움직일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市場價格이 下限線 以下로 떨어지면 市場의 供
 給剩餘分을 사들여 備蓄하고, 上限線 以上으로 올라갈 때는 備蓄
 分을 放出하거나 그래도 모자라면 一部 輸入을 해서 放出하는 것

<表 8 >

畜産物의 價格, 所得彈性值

	牛 肉	豚 肉	鷄 肉	鷄 卵
所得 彈性 值	1.205	1.0733	0.3942	1.0269
價格 彈性 值	-0.8788	-1.4743	-0.2940	-1.9172

資料 : 許信行, 「主要 畜産物 需要分析과 豫測」, 農村經濟,

Vol. 1, No 3. 1978. 12.

이다. 이를 위해서는 收買備蓄事業을 擴大하고 冷蔵施設 등 收買備蓄을 위한 施設이 擴充되어야 한다.

畜産物의 國內生産量이 需要量에 미치지 못해 價格이 安定帶의 上限線을 훨씬 넘을때 價格을 安定시키기 위해 輸入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農畜産物輸入은 人口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都市勤勞者에게 저렴한 價格으로 物量을 購入할 수 있게한다. 따라서 物價上昇과 賃金上昇을 抑制하여 輸出産業의 國際競爭력을 增大시킬 수 있다. 그러나 輸入은 適切한 制度的 장치 없으면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不均衡을 深化시킬 수 있다. 國際農産物價格은 매우 不安定하고 또 食糧生産國들이 食糧을 政治的 도구로 活用하려는 경향이 있어 食糧安保面에서 돈만 있으면 항상 食糧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危險한 생각이다. 또 방만한 輸入政策은 家畜飼育頭數를 減少시키고 技術向上과 施設投資를 기피하여 輸入의 악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한편 낮은 牛肉價格政策 때

문에 代替財인 豚肉, 鷄肉의 需要減退를 超來하여 養豚養鷄産業의 不況을 가져온다. 따라서 國內畜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不足한 物量을 輸入에 依存한다는 것은 매우 危險한 일이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國內生産基盤을 擴充시켜야 한다. 豚肉, 鷄肉 등은 國內自給 餘력이 충분하므로 正確한 觀測業務를 통해서 過剩되거나 不足함이 없도록 조절해 나가야 한다.

生産基盤擴充을 위해서는 生産者에게 적정한 農家受取價格을 保障하여 畜産物増産을 誘導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畜産物 飼育의 대부분이 導入飼料에 依存하고 있다. 酵素飼料 또는 草食飼料 등 自給飼料의 比重을 높이는 한편 開發이 可能한 野山은 草地를 造成하여 國內生産基盤構築에 힘써야 한다. 이외에도 品種改良 飼養管理 등 技術革新이 병행되어야 한다.

價格安定을 위해서는 첫째, 畜産物의 流通構造를 改善해야 한다. 現在는 畜産物의 流通段階가 많아 流通마진率이 必要以上으로 높아지고 있다. 系統出荷 등으로 流通段階를 줄여 生産者, 消費者를 동시에 保護해야 한다. 둘째, 生産者인 農民들은 家畜販賣나 飼料購入時 商人들의 需要와 供給獨占 때문에 많은 被害를 입고 있는데 이들의 被害를 줄이는 方法이 摸索되어야 한다. 都賣市場의 競落過程에서 中間商人들의 농간으로 競落價格이 不公正하게 決定되는 수가 많고 小賣段階인 精肉店에서도 不當等級, 不正計量, 混肉販賣 등으로 不當한 利益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對策이 必要하다. 流通構造改善을 위해서는 政府도 많은 努力을 기

올려야하지만 生産者, 消費者團體를 養成하여 그들 스스로가 中間商人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畜産物의 需給安定方法의 하나로서 現在 쇠고기에 편중되어 있는 消費性向을 돼지고기, 닭고기에게로 轉換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畜産物은 작은 面積에서 短期間 飼育이 可能하고 또 營養価도 거의 같으므로 이들의 消費를 促進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學校 등에서 長期的인 食品教育和 消費者啓蒙을 통하여 選好傾向을 바꾸도록해야 한다. 그리고 조리법을 開發하여 肉類消費를 多樣化하고, 加工食品工業을 發展시켜 畜産物 價格이 暴落할 때 加工食品을 많이 生産해 두었다가 값이 上昇할 때 이를 消費하도록 한다.

根本적인 需給安定을 위해서는 正確한 需給豫測을 통한 生産調節이 必要하다. 畜産物生産에는 週期가 있어서 한 해의 價格이 올랐을 때 그 다음 해에는 生産이 過剩되어 價格이 暴落하는 수가 많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正確한 豫測을 해서 生産者團體를 통하거나 飼育農家에 알려져서 生産을 調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生産者團體를 保護, 育成하고 正確한 畜産統計가 나올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

V. 要約 및 結論

生産者, 消費者保護를 위해서는 어떤 水準의 價格이 바람직한가를 生産費補償方式, 價格 Parity 方式, 消費者負擔許容方式 등 세 가지 方法으로 月別適正價格을 品目別로 試算해 보았다. 農産物 價格은 資源配分, 所得分配 등 몇 가지 技能을 가지고 있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水準의 價格은 이들 技能을 왜곡시킨다. 農産物價格의 상대적 차이 내지 變化에 따라 生産者가 收益性이 낮은 品目부터 높은 品目으로 生産資源을 調整함으로써 資源配分이 不合理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價格의 變化가 생기면 生産者와 消費者間에 소득이전현상이 발생하여 所得分配가 不均衡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需給의 安定을 기하고 生産者와 消費者保護를 위해서는 適正價格의 維持가 必要하다. 適正價格水準을 維持시키는 方法에는 品目別로 각각 다른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穀類의 경우 현행 二重穀價制를 계속 施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財政赤字로 米價를 계속 維持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長期的인 技術革新으로 生産費가 節減되어 收買價를 낮출 수도 있고, 都市勤勞者의 所得向上으로 消費者負擔能力이 增大되어 放出價도 引上할 수 있기 때문에 收買一最高價格制가 바람직하다.

菜蔬類와 特用作物類는 主産團地를 造成해서 播種面積을 調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段收를 높은 水準으로 安定시키기 위해 生産基盤造成 資金支援을 擴大하여야 한다. 特用作物類는 菜蔬類에 비

해, 保管, 輸送이 便利하므로 收買-備蓄制度를 活用하고 一部는 輸出入을 許容하여 價格을 安定시키도록 한다.

畜産物中 豚肉, 鷄肉 등은 國內自給이 可能하므로 正確한 觀測業務를 통해 生産量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牛肉은 國內生産量을 增大시켜 生産基盤造成에 보다 많은 努力이 必要하다. 短期的으로는 價格安定帶를 정하여 價格이 下限線 以下로 내려가면 收買를 하고 上限線 以上으로 올라가면 放出하도록 한다. 그래도 物量이 不足할 때는 一部 輸入을 許容하도록 하는데, 이때 생기는 輸入價格과 國內價格과의 차이는 반드시 國內畜産開發政策으로 再投資하도록 하여야 한다.

註

1. 許信行, 「農産物價格政策의 再定立」, 轉換期の 韓國農業,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叢書 1, 1978. PP. 181 ~ 182.
2. 韓國銀行, 「物價總覽」 1977. PP. 72 ~ 73
3. 文八龍, 柳炳瑞, 「農産物價格分析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5, 1975. P. 21
4.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유럽의 農業政策」, 1979. PP. 3 ~ 33.
5. J.B.Penn and W.H.Brown, 「Target price and loan rate concept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U. S. D. A. 1976.

6. 常盤政治, “農産物価格政策” 「家光協会」 1978, P. 125 ~ 128
7. 經濟學辭典, 章文閣, 1976. P. 566
8. 文八龍, 柳炳瑞, 前掲書. PP. 241 ~ 243
許信行, 前掲書. P. 191
9. 文八龍, 柳炳瑞, 前掲書, PP. 244 ~ 248
10. 許信行. 「韓國畜産의 經濟分析」,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叢書. 4. 1980
11. 12. 朝鮮日報, 1980. 5. 15.
13. 許信行, “農産物価格政策 모델” 「農村經濟」, 2 권 1 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PP 3 ~ 25 를 基礎하여 整理하
였음.
14. 文八龍, “農産物価格政策과 農家所得” 「農村經濟」, 1 권 2 호,
PP 32 ~ 41.
15. 16. 金成勳, “糧政轉換論의 背景과 現實” 「新東亞」, 1979. 12
PP. 181 ~ 192.
17.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日本の 食糧管理制度” 研究資料 3.
PP. 95 ~ 96
18. 金成勳, “新鮮食品의 需給問題” 「農村經濟」 1 권 2 호
PP. 42 ~ 51
19. 金相鍾, “菜蔬類의 需給과 流通” 「農村經濟」 제 2 권 3 호. P. 56
20. 朝鮮日報, 1978. 8. 9
21. 22. 金相鍾, 前掲書, P. 57

23. 金成勳, 前掲書. P. 51
24. 文八龍, 柳炳瑞, 前掲書. 1975. PP. 184 ~ 201.
25.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畜產物價格政策의 課題와 方向”
政策協議會 시리즈 3. 1980. 5.

參考文獻 및 資料

- 國立農業經濟研究所, 「農產物流通近代化의 綜合的 接近」
1976.12. 농업경제연구보고 85 호.
- 金文植, 「農業經濟學概論」 一潮閣, 1979.
- 金炳台, 「農產物價格의 諸問題 및 安定對策」,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80. 2.
- 農協中央會調查部, 「海外諸國의 農產物價格政策」, 1976
_____ 「農產物價格政策의 現狀과 改善方向」1976.9
_____ 「主要國의 農產物流通構造」1979.
- 文八龍, 柳炳瑞. 「農產物價格分析論」 韓國開發研究院, 1975
- 徐東勳, 「韓國米穀政策의 改革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白川清著, 「農產物價格政策の展開」, 1976.
- 常盤政治, 「農產物價格政策」, 1978.
- 井上龍天著, 「農產物價格の理論の政策」 大明堂, 1971

農水産部，農業經濟局，「物価総覧」，1978.

農村振興庁，「農畜産物標準所得，1979年度」 1980.3.

農協中央会，「農産物商品便覧」，제 12 집， 1978.

_____ 「農村物価総覧」， 1976.

大韓商工会議所，「物価総覧」， 1978.

韓国銀行，「物価総覧」， 1977.

M.V.Nadkerni ， 「Agricultural Price and Development with Stability 」

National Dehli ， 1973.

RAINER SCHICKELE， 「Agricultural Policy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54.

Shepherd.Joffray,S. 「Agricultural Price Analysis 」，

5 th.ed.Iowa State University Press Iowa, 1963 .